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 검토보고

2023. 2. .

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유 천 곤

1. 신청일 및 제출자

연번	신청일	연구단체	대표자
1	2023. 2. 16.	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참여형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	정윤주
2	2023. 2. 16.	관광 트렌드를 활용한 성북 문화·관광 자원 정책개발 연구회	양순임
3	2023. 2. 16.	성북구 기후변화 대응 시책 연구모임	이인순
4	2023. 2. 16.	성북구 재개발·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	이관우

2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제5조 제2항 ‘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’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 4개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심의대상 연구단체

- 가. 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참여형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
- 나. 관광 트렌드를 활용한 성북 문화·관광 자원 정책개발 연구회
- 다. 성북구 기후변화 대응 시책 연구모임
- 라. 성북구 재개발·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례법령 :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
- 나. 예산조치 : 1,600만원(의정운영공통경비 17,325만원 10% 이내)

5. 검토보고

■ 등록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요약

1) 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참여형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

구 분	내 용	비 고
명 칭	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참여형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	
대표 및 간사	대표 : 정윤주, 간사 : 김경이	
구 성	7명	
목 적	관내 배출된 재활용품의 자원순환현황을 점검하고, 자원이 순환될 수 있는 안정적 순환 체계 구축방안을 연구하고자 함	
추진기간	8개월(3 ~ 10월)	
세부일정	별지 제3호 서식 연구활동계획서 참조	
연구활동비	기초자료조사비 등 400만원	

2) 관광 트렌드를 활용한 성북 문화·관광 자원 정책개발 연구회

구 분	내 용	비 고
명 칭	관광 트렌드를 활용한 성북 문화·관광 자원 정책개발 연구회	
대표 및 간사	대표 : 양순임, 간사 : 경수현	
구 성	6명	
목 적	성북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트렌드에 맞게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문화관련 시설들을 조사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역사·문화·예술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함	
추진기간	8개월(3 ~ 10월)	
세부일정	별지 제3호 서식 연구활동계획서 참조	
연구활동비	기초자료조사비 등 400만원	

3) 성북구 기후변화 대응 시책연구모임

구 분	내 용	비 고
명 칭	성북구 기후변화 대응 시책 연구모임	
대표 및 간사	대표 : 이인순, 간사 : 강수진	
구 성	7명	
목 적	폭염·한파 등 급변하는 지구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외 최신 사례를 조사·연구하여 성북구에 특화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	
추진기간	8개월(3 ~ 10월)	
세부일정	별지 제3호 서식 연구활동계획서 참조	
연구활동비	기초자료조사비 등 400만원	

4) 성북구 재개발·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

구 분	내 용	비 고
명 칭	성북구 재개발·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	
대표 및 간사	대표 : 이관우, 간사 : 임현주	
구 성	7명	
목 적	재개발·재건축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연구하고, 현장 방문을 통한 주민 의견 청취 및 지역 실태에 맞는 이상적인 재개발·재건축 방안을 마련하여 성북구의 재개발·재건축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	
추진기간	8개월(3 ~ 10월)	
세부일정	별지 제3호 서식 연구활동계획서 참조	
연구활동비	기초자료조사비 등 400만원	

■ 검토의견

- 2023년 2월 ‘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참여형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’, ‘관광 트렌드를 활용한 성북 문화·관광·자원 정책 개발 연구회’, ‘성북구 기후변화 대응 시책연구모임’, ‘성북구 재개발·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’ 4개의 연구단체가 연구 활동 계획서를 제출 하였음.
- 2013년 11월 7일 제정된 ‘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’(이하 조례)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 활동 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,
- 심의내용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,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, 연구 활동비 책정과 배분,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임.
- 기 접수된 4개의 ‘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’를 검토한 바 연구단체 명칭, 구성, 목적, 추진방향, 추진기간, 세부일정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-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‘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(1억 7,300만원)의 10% 이내에서 지원하고, 각 의원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’로 규정하고 있으며,
- 조례 제10조 제2항 1호 및 2호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‘1.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및 여비, 2.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, 강사료, 전문가 자문경비, 세미나·공청회·토론회 등 기타 필요경비’로 규정되어 있으며, 4개의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소요 예산은 적절하다고 사료됨.

- 연구단체는 의원님들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,
- 4개의 연구활동계획서를 검토 한 결과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모임을 구성함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 됨.